쌍문역 서측 원주민 임시주거용 임대주택 공급 공고

※ 금회 최초공급 이후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는 즉시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임에 따라 추가 임시주택 공급은 불가합니다.

■ 본 임대주택 공급신청은 쌍문역 서측 원주민(철거민·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공급함에 따라 일반 신청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공고일은 **2026.10.30.(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나이,세대구성원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공급일정)** 일정은 현물보상계약 일정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급신청서 접수	입주요건심사·서류보완요청	당첨자추첨	주택열람	당첨자 주택선택	계약체결
'26.11.16(월) ~ 11.20(금)	'26.11.23(월) ~ 11.27(금)	'26.11.30(월)	별도안내	'26.12.7(월) ~ 12.31(목)	'27.1월말 별도안내

※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자격이 안될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동호변경 불가)** 입주당첨자가 직접 입주 주택 및 동 호수를 선택하며 개인 사정에 따른 입주주택 및 동호수 변경은 불가합니다.

▸**(모집인원)** 계약포기자를 감안하여 모집공고 호수(83호)의 2배수를 예비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 83명 + 예비자 166명

▸**(공급방법)** 당첨자 및 예비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추첨)** 입주자 선정을 위한 추첨은 주민대표 3인과 공사직원 3인 및 자율참관자 등이 참관하여 난수추첨에 의한 당첨자 및 예비자 순위를 선정하며, 낙첨자의 경우 공급이 불가합니다.(주민대표 및 자율참관자 등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추첨은 공사 직원 3인의 참관하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열람)** 주택열람은 당첨자 추첨 후 주택선택일 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보수상황 등 공사일정에 따라 일부 주택이 제외될 수 있으며, 열람 시 주택현황으로 계약됩니다.

▸**(주택선택)** 당첨 후 당첨자별 주택선택일 안내시간까지 미방문 시 탈락처리됩니다.
*** 일자 지정 후 별도 안내 예정**

▸**(임대조건)** 주택선택 이후 소득심사를 통해 임대조건 유형(수급자, 소득80%이하, 소득80%초과)이 결정되며, 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이 진행됩니다.

▸**(계약체결)** 입주자로 선정 및 주택선택 이후 지정된 기일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공사가 공급하는 임시거주용 임대주택에 입주가 불가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갱신계약)** 입주 후 원주민 재정착의 취지와 다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후 갱신계약이 거절됩니다.

▸**(임대기간)** 이 주택은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시거주기간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중도 퇴거 시 그 퇴거일)까지입니다.

1. 대상주택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2. 임대 대상 및 임대 조건(총 83호)

- 임시주거용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잔금은 90%입니다.
- **주택 세부내역은 붙임1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 주택 세부내역 붙임 파일 및 아래 표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안내하는 금액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자치구	소재지	주택규모 (전용면적㎡)	공급호수	유형	기본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도봉구	방학동	13~37	6	수급자	3,473,000~5,945,000	70,110~344,910
				소득80% 이하	28,875,000~129,826,000	44,640~187,100
				소득80% 초과	32,999,000~148,373,000	50,140~210,430
	쌍문동	17~57	4	수급자	2,199,000~7,183,000	35,290~411,770
				소득80% 이하	15,726,000~185,356,000	23,070~224,850
				소득80% 초과	17,971,000~211,835,000	26,070~251,890
	창동	16~57	4	수급자	3,849,000~6,456,000	162,880~320,260
				소득80% 이하	62,069,000~138,363,000	91,150~176,940
				소득80% 초과	70,936,000~158,129,000	102,600~198,340
노원구	상계동	23~54	18	수급자	2,968,000~7,473,000	66,970~468,420
				소득80% 이하	28,197,000~186,951,000	42,770~250,130
				소득80% 초과	32,225,000~213,658,000	48,150~281,400
	월계동	25~44	6	수급자	3,848,000~5,498,000	52,120~167,030
				소득80% 이하	24,020,000~62,971,000	36,030~96,650
				소득80% 초과	27,453,000~71,967,000	40,620~108,650
중랑구	망우동	25~47	6	수급자	3,290,000~5,523,000	116,230~326,920
				소득80% 이하	45,923,000~117,105,000	69,550~177,930
				소득80% 초과	52,483,000~133,835,000	78,280~200,240
	면목동	17~53	11	수급자	1,917,000~8,420,000	38,830~352,340
				소득80% 이하	15,770,000~182,268,000	25,030~192,340
				소득80% 초과	18,023,000~208,327,000	28,030~214,580
	묵동	22~89	7	수급자	2,732,000~11,369,000	56,050~204,220
				소득80% 이하	23,162,000~87,745,000	35,330~129,160
				소득80% 초과	26,473,000~100,282,000	39,740~145,860
	상봉동	29~57	6	수급자	5,115,000~8,054,000	383,640~456,350
				소득80% 이하	138,242,000~174,817,000	206,000~245,330
				소득80% 초과	157,991,000~199,791,000	231,510~275,640

	중화동	33~58	4	수급자	5,060,000~7,539,000	186,630~422,240
				소득80% 이하	75,780,000~150,718,000	111,360~228,490
				소득80% 초과	86,606,000~172,250,000	125,790~257,210
광진구	구의동	39	1	수급자	5,247,000	140,610
				소득80% 이하	55,889,000	83,420
				소득80% 초과	63,872,000	94,080
	능동	46~47	3	수급자	5,300,000~7,542,000	231,750~601,470
				소득80% 이하	83,465,000~210,978,000	126,790~317,410
				소득80% 초과	95,389,000~247,117,000	142,690~356,340
	자양동	40~42	2	수급자	4,990,000~5,093,000	229,560~235,400
				소득80% 이하	81,422,000~84,270,000	132,650~133,610
				소득80% 초과	93,054,000~96,310,000	148,160~149,650
	중곡동	34~61	5	수급자	4,158,000~9,947,000	112,190~212,990
				소득80% 이하	46,158,000~88,934,000	67,650~130,530
				소득80% 초과	52,751,000~101,638,000	76,450~147,480

-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이 유형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유형에 대한 판단은 당첨자 주택선택 후 계약체결 전에 소득심사('27.1월말 예정) 결과에 따라 확정되며, 소득심사 시점에 발표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판단 기준이 됨에 따라 아래 안내된 기준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형별 임대조건

유형	「수급자 등」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소득 8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이하**	「소득 80% 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초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	시중 시세의 70%	시중 시세의 8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해당 금액(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0%	**3,050,690**	**4,693,016**	**6,534,743**	**7,041,762**	**7,461,588**	**7,925,010**

* 가구원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 소득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등), 기타소득(공적이전 등)

* 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임대보증금 전환)** 아래의 조건으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월임대료 감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80% 이하」** 및 **「소득80% 초과」** 유형은 임대보증금 감액만 가능하며 **월임대료 감액은 불가**합니다. 또한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월임대료 감액)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임대보증금 감액)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관리비등)**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에 대해 외부 위탁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세대 개별사용분 제외)가 2~3배 이상 높을 수 있으며, 상주관리인 유무에 따라 관리비가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신청 자격

- **(기본자격)** 공고일(**'26.10.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단, 가옥소유자의 경우 사업지구 내 소유주택은 제외)**으로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쌍문역 서측에 편입되는 지번에서 아래 ①·②·③ 거주유형별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후 사업지구 외로 이전하려는 동일세대에 속하는 세대주(원)

※ 금회 임시주거용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소득·자산기준과 관계없이 공급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거주유형별 기본자격

① **가옥소유자**
공람공고일('21.11.25., 당일포함)부터 사업지구 내 계속 거주하다 이주하는 분

② **가옥세입자**
지구지정일* 3개월 이전('21.9.30., 당일포함)부터 사업지구 내 계속 거주하다 이주하는 분

③ **무허가건축물세입자**
지구지정일* 1년 이전('20.12.31., 당일포함)부터 사업지구 내 계속 거주하다 이주하는 분

* 지구지정일 : '21.12.31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외국인 배우자	공고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경우를 말합니다.
• 외국인 직계 존비속	공고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신청 후 외국인 세대구성원의 출국 등으로 외국인등록번호가 효력중지 또는 말소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고일 기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부여된 상태를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세대원수 기준) 공고일 당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세대주, 세대원수)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공급합니다. 단, 세대구성원 모두 위의 임시 이주주택 기본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임신, 출산, 결혼, 입양, 미성년자녀의 학업 등의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

• **(미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세대주인 미성년 자녀(내국인)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당첨자 추첨 및 주택선택 일정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아래 「5. 신청서류」 및 첨부된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신청접수기간('26.11.16.(월)~'26.11.20.(금))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필요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우편으로 제출(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서울스퀘어 18층 보상판매1팀) 가능하며, 이 경우 '26.11.20.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합니다.

접수기간	접수장소	제출서류
'26.11.16.(월) ~ 11.20.(금)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17, 쌍문역서측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서울스퀘어 18층 보상판매1팀 ('26.11.20.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5. 신청서류」 일체

- **(당첨자 추첨)** 신청서류 접수 후 적격자에 한해 당첨자 및 예비자 순번을 난수추첨의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자율참관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접수(현장)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일	추첨장소	비고
'26.11.30.(월) 오후 2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LH 서울동부권주거복지지사 마이홈센터	참관신청 가능

- **(주택열람)** 주택열람은 당첨자 추첨 이후 주택선택일 전 주거복지지사의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결정하며, 일정이 확정되면 당첨자 및 예비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주택선택)** 주택선택일에 당첨자 순번에 따라 지정하며, 주택선택일에 미참여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예비자의 경우 당첨자 주택선택이 완료된 이후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선택이 진행됩니다.
  또한 주택선택 완료 이후에는 주택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선택일	선택장소	비고
추후 별도 안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08, 우덕빌딩 6층 쌍문역서측 현장사무소	주택선택 완료 이후 주택 변경 불가

- **(계약체결)**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전자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 계약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LH에서 송부하는 전자계약 체결 안내문에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대조건 확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소득심사(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이하인지 여부)가 진행됩니다.

계약체결일	계약장소	비고
'27.1월말부터 진행예정 (자세한 날짜는 추후 송부되는 계약체결 안내문 참고)	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	계약체결일 및 계약장소(전자 또는 현장)는 계약체결 안내문 참고 필요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10.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구비서류</th><th colspan="2">서류유형</th></tr>
<tr><th>필수</th><th>추가
(해당자)</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본인 신청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td><td>O</td><td></td></tr>
<tr><td>배우자
신청 시</td><td>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td><td></td><td>O</td></tr>
<tr><td>제3자
대리인
신청 시</td><td><table><tr><th>인감증명 방식</th><th>서명확인 방식</th></tr><tr><td colspan="2">①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td></tr><tr><td>②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③ 위임장(붙임2) 참고
④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td><td>②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위임장(붙임2) 참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td></tr></table></td><td></td><td>O</td></tr>
<tr><td rowspan="7">공통
서류</td><td>① 임시주거용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붙임3)</td><td>O</td><td></td></tr>
<tr><td>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4)
* 대상자 전원(신청자 포함)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불가됨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td><td>O</td><td></td></tr>
<tr><td>③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td><td>O</td><td></td></tr>
<tr><td>④ 주민등록표초본(전부표기)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td><td>O</td><td></td></tr>
<tr><td>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 제출</td><td>O</td><td></td></tr>
<tr><td>⑥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공고일 현재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완료된 사람에 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신청 후 외국인 세대구성원의 출국 등으로 외국인등록이 말소되거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td><td></td><td>O</td></tr>
<tr><td>⑦ 임신진단서
*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가구별 인수에 포함하고자 하는 해당자만 제출</td><td></td><td>O</td></tr>
</table>

공통 서류	⑧ 입양관계증명서 * 가구별 인수에 포함하고자 하는 해당자만 제출		O
	⑨ 건축물대장 * 거주하는 주택의 건축물 대장 ('주택'여부 확인용) * 지구지정 **1년 이전**('20.12.31 당일포함)부터 사업지구 내 연속거주 시 제출 불필요	O	
	⑩ 임대차계약서(사본) * 세입자의 경우만 제출		O

6. 유의사항

항목	유의사항
임대기간 및 재계약 조건	• 이 주택은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시거주기간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중도 퇴거 시 그 퇴거일)까지입니다. • 임시거주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해당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으로의 입주포기 확인 및 해당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 거주(최장거주기간 20년 내)가 가능합니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 이주자격을 취득하거나, 토지등 소유자의 자격상실 또는 이주자 주택 입주권을 전매하는 등 임시 이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내된 임대조건은 향후 계약시점에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 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우리 공사가 공급하는 임시이주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 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임대주택에 빌트인 되어있는 가전·가구가 있는 경우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훼손 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여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주택 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잔금완납 전 키 불출은 불가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7. 문의처 : ☎ 02-6400-5587 / 5927 / 5924

2026. 10. 30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붙임1 **임시이주주택 내역**

연번	구	동	주소(도로명)	동	호	구조 및 주택유형			
						방수	층수	승강기유무	주택유형
1	도봉구	방학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70(방학동) 쏘네하임	102	401	2	4층	Y	다세대주택
2	도봉구	방학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70(방학동) 쏘네하임	102	303	2	3층	Y	다세대주택
3	도봉구	방학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70(방학동) 쏘네하임	103	401	2	4층	Y	다세대주택
4	도봉구	방학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6가길 62(방학동) 위드62		202	2	2층	Y	도시형생활주택
5	도봉구	방학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5라길 7-10(방학동)		303	2	3층	N	다세대주택
6	도봉구	방학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다길 15-7(방학동)		304	1	3층	N	다가구주택
7	도봉구	쌍문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51길 4(쌍문동) 시온빌		404	2	4층	N	도시형생활주택
8	도봉구	쌍문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5길 27(쌍문동) 휴먼럭스빌	B	501	3	5층	Y	도시형생활주택
9	도봉구	쌍문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8길 58(쌍문동)		201	1	2층	N	다가구주택
10	도봉구	쌍문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8나길 31(쌍문동,쌍문백년빌)		201	1	2층	N	다세대주택
11	도봉구	창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4길 61-13(창동,승윤노블리안시티)	102	501	3	5층	Y	오피스텔
12	도봉구	창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4길 61-13(창동,승윤노블리안시티)	102	401	3	4층	Y	오피스텔
13	도봉구	창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4길 61-15(창동,승윤노블리안시티)	101	401	3	4층	Y	오피스텔
14	도봉구	창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0길 7-21(창동)		305	1	3층	N	다세대주택
15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0나길 37(상계동) 양지쉐르빌	A	502	2	5층	Y	도시형생활주택
16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길 65-14 (상계동)		101	2	1층	N	다가구주택
17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나길 15(상계동,해밀1동)		501	3	5층	Y	다세대주택
18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다길 12-9(상계동,시온1동)		201	2	2층	Y	다세대주택
19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다길 17(상계동) 뉴미소홈타운		501	2	5층	N	다세대주택
20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라길 27(상계동) 미소드림		502	2	5층	N	다세대주택
21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라길 27(상계동) 미소드림		501	2	5층	N	다세대주택
22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바길 6		303	1	3층	N	다가구주택
23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23길 68		402	2	4층	N	다세대주택
24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24길 15-8 (상계동)		201	2	2층	N	다가구주택
25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4가길 24(상계동)		101	1	1층	N	다세대주택

26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4가길 24(상계동)		102	1	1층	N	다세대주택
27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4가길 24(상계동)		201	1	2층	N	다세대주택
28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4가길 24(상계동)		302	1	3층	N	다세대주택
29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4가길 24(상계동)		402	1	4층	N	다세대주택
30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7길 14 (상계동)		201	2	2층	N	다가구주택
31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9길 6(상계동)		401	1	4층	N	다세대주택
32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50길 12 (상계동)		202	2	2층	N	다가구주택
33	노원구	월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4가길 29-10 (월계동)		203	3	2층	N	다가구주택
34	노원구	월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4가길 29-10 (월계동)		502	2	5층	N	다가구주택
35	노원구	월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4가길 43-19		302	2	3층	N	다세대주택
36	노원구	월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4가길 59-5(월계동)		101	1	1층	N	다세대주택
37	노원구	월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4가길 59-5(월계동)		301	1	3층	N	다세대주택
38	노원구	월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4가길 59-5(월계동)		401	1	4층	N	다세대주택
39	중랑구	망우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7가길 33 (망우동)		302	1	3층	N	다세대주택
40	중랑구	망우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74가길 9 (망우동)		201	3	2층	N	다세대주택
41	중랑구	망우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14길 23 (망우동)		102	2	1층	N	다가구주택
42	중랑구	망우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00길 49-22(망우동) 스마트빌	B	501	3	5층	N	다세대주택
43	중랑구	망우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05길 21(망우동)		301	1	3층	N	다세대주택
44	중랑구	망우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96길 3(망우동)		302	1	3층	N	다세대주택
45	중랑구	면목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54길 30(면목동)	101	402	3	4층	N	다세대주택
46	중랑구	면목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00길 101(면목동,한울타운) 한울타운	101	201	2	2층	Y	도시형생활주택
47	중랑구	면목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00길 95(면목동,한울타운) 한울타운	105	401	2	4층	Y	도시형생활주택
48	중랑구	면목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09가길 5(면목동,현대휴온아파트)		614	1	6층	Y	도시형생활주택
49	중랑구	면목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99길 33-12 (면목동)		101	1	1층	N	다가구주택
50	중랑구	면목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56가길 37(면목동)		302	3	3층	N	다세대주택
51	중랑구	면목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64길 8(면목동,한울퍼스트빌) 한울퍼스트빌	402	402	2	4층	Y	다세대주택
52	중랑구	면목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 26-2 (면목동)		201	2	2층	N	다가구주택
53	중랑구	면목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15길 52-5		403	2	4층	N	다세대주택
54	중랑구	면목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15길 6 (면목동)		201	3	2층	N	다세대주택

55	중랑구	면목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51길 42(면목동) 유진뜨레지움		803	2	8층	Y	아파트
56	중랑구	묵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4길 37 (묵동)		301	2	3층	N	다가구주택
57	중랑구	묵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6길 13		101	2	1층	N	다가구주택
58	중랑구	묵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6길 13		202	3	2층	N	다가구주택
59	중랑구	묵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6길 13		301	3	3층	N	다가구주택
60	중랑구	묵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52길 26-17 (묵동)		201	2	2층	N	다세대주택
61	중랑구	묵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52길 40-10 (묵동)		301	3	3층	N	다가구주택
62	중랑구	묵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57나길 8-2 (묵동)		101	1	1층	N	다가구주택
63	중랑구	상봉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41길 6(상봉동,청운명가프라임)		603	2	6층	Y	도시형생활주택
64	중랑구	상봉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41길 6(상봉동,청운명가프라임)		1002	2	10층	Y	도시형생활주택
65	중랑구	상봉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41길 6(상봉동,청운명가프라임)		1106	3	11층	Y	도시형생활주택
66	중랑구	상봉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41길 6(상봉동,청운명가프라임)		1203	2	12층	Y	도시형생활주택
67	중랑구	상봉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43길 11(상봉동)		305	3	3층	Y	다세대주택
68	중랑구	상봉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43길 11(상봉동)		602	3	6층	Y	다세대주택
69	중랑구	중화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02-5 (중화동)		201	3	2층	N	다가구주택
70	중랑구	중화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2길 61(중화동,에이스빌, A동) 에이스빌	A	303	3	3층	N	다세대주택
71	중랑구	중화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2길 61(중화동,에이스빌, B동) 에이스빌	B	301	3	3층	N	다세대주택
72	중랑구	중화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182-1(중화동,새울센스빌) 새울센스빌	B	302	2	3층	Y	도시형생활주택
73	광진구	구의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9길 12-8 (구의동)		201	2	2층	N	다가구주택
74	광진구	능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22길 30(능동,블루스카이)		503	3	5층	Y	다세대주택
75	광진구	능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6길 109 (능동)		102	1	1층	N	다가구주택
76	광진구	능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6길 109 (능동)		202	1	2층	N	다가구주택
77	광진구	자양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28-4		201	2	2층	N	다세대주택
78	광진구	자양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8길 44		201	2	2층	N	다세대주택
79	광진구	중곡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9길 89 (중곡동)		401	2	4층	N	다세대주택
80	광진구	중곡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29길 27 (중곡동)		402	3	4층	N	다세대주택
81	광진구	중곡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66길 55 (중곡동)		402	2	4층	N	다세대주택
82	광진구	중곡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22길 11-19 (중곡동)		102	2	1층	N	다가구주택
83	광진구	중곡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답십리로84길 33 (중곡동)		402	2	4층	N	다세대주택

붙임2 **위임장**

위 임 장

위 임 인(본인, 위임하는 분)

성 명 : (인)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전화) (HP)

본인은 쌍문역 서측 도심복합사업 원주민(철거민/ 세입자) **임시주거용 임대주택 공급신청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수 임 인(대리인, 위임받는 분)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부 1.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공고일 이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증명(확인)서에 한함.
2.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 귀하

붙임3 **임시주거용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임시주거용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기재불요)

유의사항 (필독)	1. 본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공급은 쌍문역 서측도심복합사업의 철거민·세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신청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공급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공사가 확보한 임대주택 현황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당첨되지 않으면 공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신청 후 적격자에 한해, 난수추첨에 따른 당첨 순위에 따라 입주당첨자가 직접 입주 주택 및 동호수를 선택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입주주택 및 동호수 변경요청은 불가합니다.** 4. 추첨 순번은 금회 신청건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5. 1세대 2인 이상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직계존·비속 관계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할 경우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6.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한 후에 제출하실 경우 무효로 간주합니다. **7. 공급신청서의 안내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숙지하신 후 아래 서명란에 서명하여 주시고, 서명이 없으면 공급신청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① 신청인 정보

본인	**성명**		**주민번호**	-	배우자 없음 ( )
배우자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배우자 ( ) 분리배우자 ( )
본인 주소	주민등록표상 도로명주소로 기재하세요.(동·호수 및 층수 포함)				
휴대전화번호	- -		**이메일**	@	

② 세대원 정보 (본인포함 세대원수 : 명)

③ 수급자 등 해당여부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④ 거주유형 : □ 가옥소유자 □ 가옥세입자 □ 무허가건축물세입자

⑤ 신청인은 위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공급신청 유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추첨방법·대상주택·임대조건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위 기재사항이 입력 정보의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 이후 임시사용자 입주자격 상실조건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이와 같이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는 본인이 유의사항, 대상주택·추첨방법 등을 직접 확인하고 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배우자 □기타대리인		. .	- -

*** 신청의사 확인업무를 위해 대리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붙임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구비서류 일체**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 대리인 : (인) (대리신청)

붙임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 귀하